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1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3
2.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 이양	8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1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함)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84조제2항)¹⁾.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안전인증) ① (생략)	제84조(안전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 ----- --.
<u>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u>	<u>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u>

1) 안전인증 면제 대상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좌동)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	(좌동)
수출 목적 제조	(좌동)
<신 설>	수출 목적 수입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3. (생략) ③ ~ ⑦ (생략)	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2.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²⁾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제84조제1항)³⁾,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며(제87조제1항)⁴⁾, 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 분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9종)	①프레스 ②전단기 및 절곡기 ③크레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볼러기 ⑦사출성형기 ⑧고소작업대 ⑨곤돌라
방호장치 (9종)	①프레스 및 전단기방호장치 ②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③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압력용기 압력방출용 과열판 ⑥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가설기자재(추락·낙하 방지용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12종 33품목) ⑨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보호구 (12종)	①안전모(추락·감전)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마스크 ⑦전동식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전인증대상기계등임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69조제1호)⁵⁾.

이러한 안전인증제도의 예외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①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제84조제2항)⁶⁾,

특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됨⁷⁾.

-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6)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12. (생략)

그런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안전인증 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이 인증 심사 절차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⁸⁾.

개정안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도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① 해당 기업의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② 현행법령으로⁹⁾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는 대상이 일반 사용이 아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어 수입국의 기준에 따르게 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느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도 개별 국가의 여건에 맞춰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표] 안전인증 전부 면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8)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6.)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한 건수는 약 2천여 건에 달한다고 밝힘.

9)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국내 사용목적이 아닌,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반면, 이와 유사한 조건임에도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면제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기업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 이양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유해·위험기계등의 품질·안전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등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임(안 제102조, 제163조, 제16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생략)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u>고용노동부장관</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
③ <u>고용노동부장관</u> 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u>시·도지사</u> 는----- ----- ----- ----- <u>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u> -----. ----- -----.

1. ~ 3. (생략)

<신설>

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

1. ~ 3.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시·도지사는-----

-----.

⑦ 시·도지사는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등록,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 제7항-----

기준, 통보의 방식과 절차-----

-----.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82조제4항--

<u>102조제3항</u>,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21. (생략)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u>지원과</u>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 41. (생략) ③ (생략)	----- ----- 3. ~ 7.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21. (현행과 같음) 22. -----지원 23. ~ 4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위험기계등¹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나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게 유해·위험기계등의 품질·안전성 또는 설계·시공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02조제1항),

[표]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 ①'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②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10) 유해·위험기계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의미함(「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1항)

- 유해·위험기계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77조, 제78조)

①안전인증	②안전검사	③자율안전확인신고	④중소제조업 12대 기인물
1.프레스 2.전단기 및 절곡기 3.크레인 4.리프트 5.압력용기 6.롤러기 7.사출성형기 8.고소작업대 9.곤돌라	1.프레스(①) 2.전단기(①) 3.크레인(①,④) 4.리프트(①) 5.압력용기(①) 6.롤러기(①) 7.사출성형기(①,④) 8.고소작업대(①) 9.곤돌라(①) 10.국소배기장치 11.원심기 12.컨베이어(④) 13.산업용로봇(③,④)	1.연삭기 또는 연마기 2.산업용 로봇(②) 3.혼합기(④) 4.파쇄기(④) 또는 분쇄기(④) 5.식품가공용 기계 (파쇄, 절단, 혼합(④), 제면기) 6.컨베이어(④) 7.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9.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등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10. 인쇄기	1.지게차 2.크레인(①,②) 3.컨베이어(②) 4.지붕·대들보 5.사다리 6.화물운반트럭 7.배합기, 혼합기(③) 8.굴착기 9.후크·샤클 10.산업용 로봇(②,③) 11.분쇄기(③), 파쇄기(③) 12.사출성형기(①,②)

	제품 수거·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③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지원내용	①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지원 ②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③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등 * (지원예산 규모) '23년도 기준 5억 5,700만원 ** (지원한도) 사업장당 5,000만원(연구개발 소요비용의 60%, 시험장비 소요비용의 50%)

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¹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되(제102조제2항),

관련 등록을 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제102조제3항·제4항).

이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자에 대한 등록 신청 및 지원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며¹²⁾,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서류를 확인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참고자료 2)에서 정한 기준의 적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참고 2 참조)

12)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음¹³⁾.

개정안은 유해·위험기계등의 품질·안전성 또는 설계·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제조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2023. 2. 10.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고용분야 8개의 지방이양 과제에¹⁴⁾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제도”가 포함된 것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14) p.19, 참고3 고용·노동 분야 이양과제 참조

다만, 개정안은 ① 모든 권한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현행법의 체계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 ② 현행법 제165조제2항제22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의 등록업무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이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인지 등 등록 요건 전반에 대한 심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고 해당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③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의 등록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행정 효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한 것이므로 정부의 추진 계획 반영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5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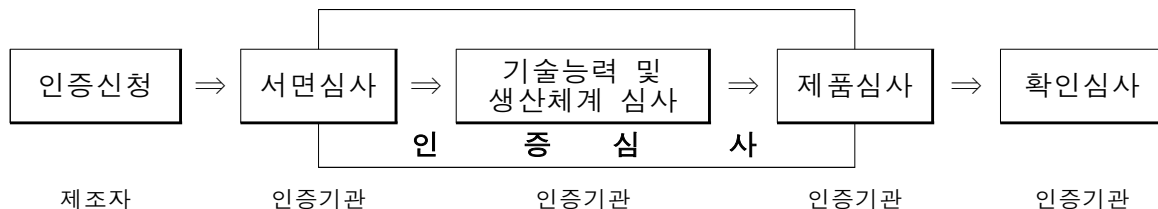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제도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09년부터 시행 중)

□ 취지 및 개념

- 위험성이 높은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제조·수입 단계에서 확보하는 제도,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안전성 확인

□ 안전인증 절차



▶서면심사: 제품의 기술문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델별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보증하기 위한 시스템 확보 여부 심사

▶제품심사: 기술문서와 제품의 일치 및 안전성시험 결과의 인증 적합 여부 심사

▶확인심사: 3년(또는 2년)에 1회 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사후관리)

□ 안전인증 대상

- 위험도가 높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며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구 분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9종)	①프레스 ②전단기 및 절곡기 ③크레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롤러기 ⑦사출성형기 ⑧고소작업대 ⑨곤돌라
방호장치 (9종)	①프레스 및 전단기방호장치 ②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③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가설기자재(추락·낙하 방지용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12종 33품목) ⑨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보호구 (12종)	①안전모(추락·감전)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마스크 ⑦전동식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참 고 2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등록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7조제2항 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인력	시설 및 장비
가.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가. 사무실
나. 산업위생관리기사·대기환경기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다.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1) 스모크테스터
1) 일반·정밀·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명 이상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전기·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4) 절연저항계
	5) 표면온도계
	6) 회전계(R.P.M측정기)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사·화학공장설계기술사·유체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

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인력	시설 및 장비
가.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소음진동기사 중 1명 이상 다.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2) 건축기사 1명 이상 3) 토목기사 1명 이상 4)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가. 사무실 나. 장비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참 고 3

고용·노동 분야 이양과제 (총 8개)

	과제명	주요 내용	부처
1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배 분 시 참여 강화	(현행) 외국인력(E-7-4/E-9) 도입규모 결정 시 지자체 결정 권한 및 의견수렴 절차* 미흡 → * (E-7-4) 법무부 기준에 따라 쿼터 등 연간계획 수립 (E-9) 행안부를 통해 지자체 의견 간접 수렴 (개선) ▲지자체 의견수렴 통로* 강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확대 * (E-7-4) 연간계획 수립시 광역지자체 의견수렴절차 마련 (E-9) 지방(광역)-중앙 간 협의회 정례화, 도입규모 결정 시 지역수요 반영	법무부, 고용부
2	일자리 사업 수립·집행 권한	(현행)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 (개선) 동 계획에 따라 법령제정, 신규사업 신설 및 인프라 등 구축(지역고용거버넌스 역할·위상 강화, 플러스 사업 신설, 지역고용 활성화법 제정,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 구축)	고용부
3	고용 관련 인· 허가 등 권한	(현행) 고용부장관이 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 보유 → (개선) 직업소개 및 훈련 관련 권한 시도지사 이양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 △지정직 업훈련시설 지정 및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취소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고용부
4	유해·위험기 계 등 제조사 업자 등록	(현행) 고용부 장관이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 등록 권한 보유 → (개선) 지자체장에게 권한 이양	고용부
5	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인 가 및 관리, 지도·감독	(현행) 고용부 장관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관리 권한 보유 → (개선)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	고용부

	과제명	주요 내용	부처
6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권한	(현행) 고용부 장관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권한 보유→ (개선) 파견제도 전반 개선과 함께 지자체장에게 권한 이양(구체적 방안은 추후 발표)	고용부
7	기능대학 설립·경영 권한	(현행) 기능대학(폴리텍) 경영에 지자체 참여 無, 설립 추천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보유 → (개선) 경영과정에 지자체 참여 + 설립 추천 권한도 지자체장이 보유	고용부
8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	(현행) 고용부·중기부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 (개선) 시도로 이양(관할구역內)	고용부/ 중기부